



제330회 임시회
2014. 6. 11.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5. 충청북도 지방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정책복지위원회
수석전문위원

5. 충청북도 지방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14년 6월 2일
- 회부일자 : 2014년 6월 5일

3. 제안이유

- 상위법인 「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맞게 현행 조례를 개정 정비하기 위함.

4. 주요내용

- 충청북도 지방의료원 명칭과 소재지 사항 규정 방식 정비(안 제2조)
 - 현행 조례에 명시 → 지방의료원 정관에 명시
-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조항의 자구 개정(안 별표 1)

5. 검토의견

-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「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충청북도가 설립한 청주의료원 및 충주의료원의 명칭 및 소재지 사항의 규정 방식을 개정하고,
- 과태료 부과기준 적용 조항 및 상위법과의 중복된 내용을 수정하는 내용으로서 법리적, 내용적 문제 없음.

○ 주요 내용으로는

- 안 제2조에서는 ‘충청북도 청주의료원’과 ‘충청북도 충주의료원’의 “명칭 및 소재지”를 “명칭”만 규정하고, “소재지”는 의료원 정관으로 정하도록 개정하고,
- 안 별표1 ‘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’의 적용 조항을 “제8조(권한 및 운영의 위탁)”에서 “제11조(과태료)”로 정정 수정함.
- 안 별표1의 위반행위 “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” 중 “복지부” 공무원에 관하여는 상위법 제29조(과태료)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구를 삭제함.